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사회복지사, 인권운동가로 거듭나야

| 자료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성프라자에서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의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짐 아이프 호주 커턴대 사회사업 사회복지정책학부 명예교수의 '왜 사회복지 실천에 인권관점이 필요한가?',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인권관점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등의 주제 발제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 및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짐 아이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사회복지 이용자의 욕구를 서비스 공급자가 정의하는 기존의 욕구중심의 사회복지 접근(needs-based social work approach) 방식에서 권리중심의 사회복지 접근(rights-based social work approach)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는 인권운동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짐 아이프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은 특정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은 아니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문화적 규범과 가치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어야 하며,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권을 실천하는 인권관련 종사자와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과 실천분야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하였다.

'인권' '사회복지' 양자 개념의 확장을 통한 통합 요구

이어 토론에 참여한 이명목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인권운동가들이 치열하게 투쟁했던 사안들이 실제로는 지역사회나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보장하거나 신장하기 위한 것들이었고,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했던 무수한 프로그램이나 일상 업무가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인권운동가와 사회

복지사들은 실제로는 동일한 일을 해오면서, 한편에서는 그것을 '인권' 이라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사회복지' 라고 불려왔던 것"이라며 양자가 개념의 확장을 통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을 넘어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기구가 할 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민간부분이 할 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용교 교수는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를 평가할 때 인권 관점을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가 수행하는 서비스 기준을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하고 생활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개발된 인권평가지표를 매 3년마다 전국의 복지시설에 배포하여 자기점검을 하도록하고 인권이 취약한 특정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와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복지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습득해야 하며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인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